진영산업주식회사

문서관리번호	JY-E2308-05
관리자	관리지원팀

분쟁광물(책임광물) 정책

[최종 수정일] 2023년 8월 8일

■ 책임있는 광물 구매 정책

가. 정책

① 진영산업은 분쟁광물 사용 금지 및 책임있는 광물 소싱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② 진영산업은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광물 채굴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침해와 환경 파괴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ECD 가이드, 미국 도드-프랭크 규제개혁법에 따른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SEC)의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 EU의 분쟁광물 규제 등을 기반으로 분쟁 광물 및 코발트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협력사에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 분쟁광물

진영산업은 아프리카 10개국(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을 포함한 분쟁 지역에서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 비윤리적 채굴 및 유통되는 분쟁광물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들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분쟁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 책임광물

진영산업은 분쟁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뿐만 아니라 채굴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환경 파괴 이슈가 제기되는 광물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광산의 아동 인권 침해 이슈 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광물 채굴이 분쟁의 자금원이 되지 않도록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영산업주식회사

문서관리번호	JY-E2308-06
관리자	관리지원팀

진영산업㈜ 협력사 행동규범

[최종 수정일] 2023년 8월 8일

1. 개요

가. 행동규범은 전 협력사에게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운영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행동규범 대상은 진영산업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협력사 책임과 역할은 진영산업의 모든 협력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운영과정에 있어 본 행동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진영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를 통해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윤리

가. 투명경영 및 반부패

① 협력사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 청렴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공갈, 횡령,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약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도 안 됩니다.

나. 이해상충 방지

① 협력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 · 제안 · 허가 ·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 불공정 거래 방지

① 협력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협력사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④ 협력사는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라. 위조부품 방지

① 협력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② 협력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 수출제한 준수

① 협력사는 수출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수출제한, 경제 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③ 협력사는 수출제한, 경제 제재 관련 법률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필요 시 진영산업의 현황 파악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바. 정보보호

①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②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협력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서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 책임있는 자재 구매

협력사는 '콩고민주공화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무장세력의 영향력 하에 인권침해, 환경파괴 등 비윤리적으로 채굴 및 유통되는 분쟁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및 코발트'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에 호응하여야 합니다.

3. 환경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 · 유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4. 노동/인권

가. 차별 금지 :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나. 임금지급(급여명세서 제공 포함) 및 복리후생 제공, 의무교육 실시
다. 법정근로시간을 준수　　라. 인도적 대우
마. 결사의 자유 보장　　바.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금지

위 노동 인권 항목의 법률 및 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안전/보건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나. 기계 · 기구 · 설비의 안전 관리
다. 비상상황 대응
라. 안전 진단
마. 보건 관리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 · 유지해야 합니다.